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조례중 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력의 증원은 2005. 5. 12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830명이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본 인력의 증원 사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부연하면 전국 평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324명, 서울시 평균 286명, 영등포구의 경우 352명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수는 사회복지과 25명, 가정복지과 23명,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인력 24명, 금번 증원 8명 총 80명이되고 1인당 복지대상자는 236명으로 낮아져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건소의 야간진료서비스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 3. 22 승인되었습니다.

야간진료 실적은 월 평균 26명이며 예산액은 2004년 39,750천원, 2005년 91,415천원입니다. 또한 2004. 5. 25 개정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은 존속기한이 2005. 3. 31까지로 되어있어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 진료서비스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능적 지도원 10급의 1명 감축은 서울시와 불일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 7. 4

보고자 : 김찬재